

## 4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제13조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」 제10조

## 5. 검토의견

-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으로부터 구민들이 생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응급복구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금운용계획으로 기금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# 근거법규

##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
**제8조(기금운용계획 및 결산)**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,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.

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, 새로운 비목(費目)을 설치할 수 없다.

④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**제13조(기금운용심의위원회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심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 다만,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1.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
2.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
3. 기금의 관리·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

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「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」

**제10조(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)** ①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·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6 (제269회-복지건설위제5차부록)

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③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1. 기금의 조성계획
2. 기금의 사용계획
3. 기금의 운용방법
4.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

# 2025년도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 예산(안) 검 토 보 고

## 건 축 과

### □ 예산안 규모

#### ○ 세 입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 년 도	증 감	비 율(%)
계	1,056,600	819,000	237,600	28.93
세외수입	54,000	54,000	0	
국비보조금	115,000	530,000	△415,000	
시비보조금	887,600	235,000	652,600	

#### ○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전 년 도	증 감	비 율(%)
계	2,494,453	1,712,328	782,125	45.67
도시디자인 구현 및 건전한 건축행정 구현	2,331,033	1,554,966	776,067	
행정운영경비	163,420	157,362	6,058	

### ◎ 건축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·세출안

-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8.93%인 237,600천원이 증액된 1,056,600천원으로 편성 되었으며
-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45.67%인 782,125천원이 증액된 2,494,453천원으로 편성되었음

□ 주요 편성내역

◎ 세 입 (p597)

〈세외수입〉

-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----- 54,000천원

〈국고보조금등〉

- 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----- 75,000천원

〈시비보조금〉

- 빈집정비사업----- 204,000천원
-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지원----- 333,600천원

◎ 세 출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산액	전년도	비교증감	예산안 페이지
청년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 지원 (301-01)	150,000	60,000	90,000	p602
공동주택지원사업 자본보조(402-01)	600,000	350,000	250,000	p602
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 (402-02)	135,800	0	135,800	p603
빈집정비사업(401-01)	380,000	170,000	210,000	p603
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사업 지원(402-02)	333,600	0	333,600	p604

□ 검토의견

- 예산안 p603 공동주택 소음방지매트 지원사업(402-02) 135,800천원과
- 예산안 p604 목욕탕 노후굴뚝 정비사업 지원(402-02) 333,600천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됨